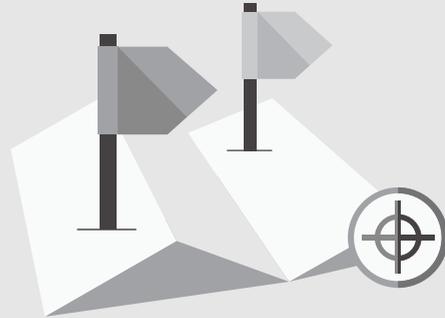


이달의 초점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과제
이현주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은하

보건복지통계 현황과 발전 과제: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신정우·천미경·전예지·진재현

인구실태조사 사례와 과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를 중심으로
이소영

조사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및 관리 방안: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과제

Evidence Based Soci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Data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복잡다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요청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제 마련, 데이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협치 강화, 여러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연계기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과 분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 강화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정책 근거 기반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의의

이 글은 2021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배경과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근거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아직 사회

보장제도는 포괄성과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당면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의미가 커지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데이터가 중요한 정책 분석 자료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한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행정데이터, 특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분석이 활발해진 계기 중 하나는 1990년대에 한시적 사회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주요 공공부조제도인 TANF를 주정부 단위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단위로 정확한 정책 효과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했다. 지역 단위의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도 대표성을 확보하는 안정적 데이터로서 행정데이터가 긴요해진 것이다. 이후 다양한 행정데이터가 정책 분석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다(Hotz, George, Balzekas, & Margolin, 1998).

유럽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다. 근거 기반 정

책이 가능하도록 하자면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을 주도, 장려하여 왔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계청들은 가용 데이터를 확대하고 설문조사를 대체하여 통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행정 자료의 활용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통계체계 비전 2020 (European Statistical System Vision 2020)’의 일환이기도 하였다(Santourian & Petrakos, 2018, p.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회보장제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6항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데이터 중 행정데이터이며, 따라서 대개 정부 활동으로 생성, 수집되는 정보이다. 이 중 일부는 민간에 의하여 생성되지만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취득, 관리하기도 한

〈참고〉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다. 예를 들어 부채 등 금융정보는 민간에 의하여 생성되지만 조세 등 정부 활동을 위하여 수집, 활용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1항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목적과 구축을 위한 정보 협력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을 참고하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연구의 목적으로 활용이 한정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심

의·조정·연구라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목적은 이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사회보장 데이터의 환경 변화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하였다. <표 1>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기관의 사회보장제도 분석 경향

표 1. 정책연구기관의 정책평가연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

연도	대상 제도	분석 자료
2009	기초노령연금	<행정DB 자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정 자료 <설문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
2014	기초연금	<공식 통계 자료>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집계 자료 <설문조사 자료>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2003	공공부조	<설문조사 자료> 대상자 및 공급자 설문조사/일반 국민 의식 조사 <정부 집계 자료 등>
2007	공공부조	<행정DB 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 행정 빅데이터 <설문조사 자료> 전국가계조사/한국복지패널/자활사업 실태조사 등
2011	공공부조	<설문조사 자료> 2003년,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2016	보육 지원	<설문조사 자료>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보육 지원	<설문조사 자료> 노동패널 10차 연도 원자료/노동패널 1-10차 연도 직업력 원자료
2012	제도군, 사회서비스	<집계 자료>
2012	정책군, 사회서비스	<설문조사 자료> 2008~2012 사회서비스 바꾸쳐사업 만족도 조사 등 <정부 집계 자료>
2007	제도군	<집계 자료> 사업별 실적 자료 <설문조사 자료> 각 사업의 사업체, 근로자 실태조사
2009	제도군	<설문조사 자료> 한국노동패널/전국가계조사 <집계 자료>
2013	제도군	<행정DB 자료> 일모아DB 등 각 일자리사업 주관 기관의 고용 관련 DB <설문조사 자료>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조사/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설문조사
2015	제도군	<설문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한국노동패널/가계동향조사
2016	제도군	집계 자료
2017	제도군	<행정DB 자료> 사업별 수급자 DB <집계 자료> <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

자료: 이현주, 강희정, 손병돈, 이재원, 박형준, 김성아. (2018).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pp. 44-45를 기초로 재구성.

표 2. 대표적인 설문조사 자료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공적연금	공공부조 수급(의료급여 등 수급액 정보 부재)/장애수당
기초연금	연금 가입과 수급,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연금, 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 지원
공공부조(현금성 급여)	학비 지원/주거보장 수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긴급복지/근로장려제
기타 정부보조금	에너지 감면과 보조금/통신비 보조 등 보조금
	기타 바우처 수급액
	장애인·노인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자료: 이현주, 오옥찬, 이윤경, 이원진, 성재민, 이길제,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p. 368.

을 정리해 본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누적이 본격화된 2010년 즈음부터 2019년 이전까지 수행된 주요 정책연구를 정리한 결과이다. 과거에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분석이 쉽지 않았던 여건에서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로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하였다. 행정데이터는 집계 자료 분석 또는 특정 제도로 한정된 행정 자료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 중 사회보장제도 분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거의 모든 설문조사 자료가 사회보장제도 중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는 360개를 넘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문조사 자료의 또 다른 문제는 여러 정책의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답하기 쉽지 않

고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 지원보다 서비스 지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고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책 분석에서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는 더욱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선도적 연구들도 특정 제도에 한정된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해당 제도의 수급자가 전 가구, 전 인구 중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지니는 집단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분석을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 분석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데이터의 한계는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지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주 활용되는 정책 지표는 주로 투입(input), 산출(output) 지표에 그친다.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 지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지표를 생산할 데이터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개선은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길을 찾는 것처럼 모호하다. 정책 기획의 근

거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강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데이터는 차츰 그 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나 정책 분석을 위한 통합 행정데이터(integrated administrative data)의 구축과 활용은 최근해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어 왔다.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고 이전의 공공부조 정책 정보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누적되었으며 기타 행정정보도 생성, 관리의 측면에서 발전을 보여 왔다. 현재 주요 사회보장제도 행정데이터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행정데이터는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정책 분석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특히 여러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행정데이터의 강점은 매우 크다. 첫째, 정보 범위의 확장이 용이하다. 이러한 강점으로 정책들의 공동 목표를 고려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큰 규모의 표본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고, 소규모 취약 집단이나 수급자 규모가 작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횡단면 자료 외에 패널 자료의 구성도 가능하다. 넷째, 분석 단위가 서로 상이한 정보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시설 정보와 시설 이용자 정보의 결합과 분석도 가능

표 3.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의 소관 부처와 관리 조직

소관 부서	대상 사업	정보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건강보장성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생계/의료/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바우처), 장애아동 가족 지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업성공패키지 등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임대주택 등	국토부, LH/SH공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과 세금 등	국세청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출생연도 등), 재산과세표준액, 재산세 등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
국가보훈처	보훈급여(수당)	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료: 이현주, 오욱찬, 이윤경, 이원진, 성재민, 이길제,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p. 70을 기초로 일부 보완.

표 4. 설문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의 장단점 비교

	설문조사 자료	(통합)행정 자료
장점	높은 접근성, 가변 정보 포괄	정보의 포괄성, 정보의 정확성, 다양한 자료 형태로의 변형 가능성, 큰 규모의 표본 자료 구성 가능성, 낮은 조사 비용
단점	제한된 정보 높은 비용(별도 조사 수행 시)	낮은 접근성(정보 정의 부재 등) 인식과 태도 파악 취약

자료: 이현주, 오옥찬, 이윤경, 이원진, 성재민, 이길재,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p. 368을 기초로 재구성.

해진다. 다섯째, 조사의 비용(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다만 행정데이터는 대개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된 가변 정보(soft variable)를 담고 있지 않다.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면 개별 현금 지원이나 개별 서비스 지원의 효과 분석을 넘어 전체 현금 지원의 소득계층별, 재산 분위별, 지역별 효과를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원의 효과도 유사 목적 서비스의 전반적 효과를 상세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비스 지원에서는 수급 가구나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의 지원 단가를 모르는 경우가 흔하고 결국 서비스 지원의 수급 집단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묻는 설문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야 수급 집단에 대한 지출 보전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낼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작은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대표성이 확보되는 큰 규모의 통합 행정데이터로는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 가구, 전 인구 중에서 제도적 포괄성이 높은 집단과 제도적 배제 위험에 놓인 집단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수급자 규모가 작은 제도라 해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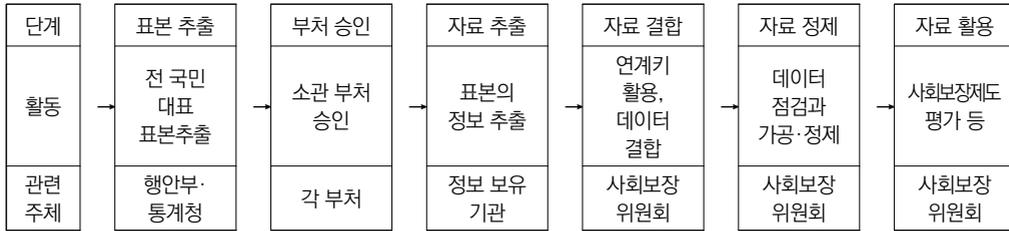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추출과 연계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절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을 추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승인을 거쳐 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뒤 추출한 데이터를 가명처리된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한다. 연계 과정으로 마련된 통합 행정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비식별 조치를 한 후 안전성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가공·정제를 한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각 단계에서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보 협조에 대한 심의와 결정, 정보 추출과 비식별 조치 등은 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에서 공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 밖에도 정보 보유 기관은 지속적으로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한편 행안부 또는 통계청과 같이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표본 추출과 표본의 비식별 연

그림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1. 1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안).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자료. p. 3 일부 수정.

계기 마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협력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협력을 위한 협상, 통합 행정데이터에 대한 추가적 비식별 조치, 데이터의 점검과 정제 등의 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이후 해당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공간 구성 등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 정보의 범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의 범위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보 범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

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된 법적 개념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포괄하며 사회적 위험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포괄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의 목록을 적시한 조항들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관련 별표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이 적시되어 있다.

표 5.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목록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한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8호·제9호에 따른 등록금, 학자금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관련 별표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급여, 대여 및 대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수월액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민연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급여 신청·실시와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10조·제13조·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지급과 수급자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의 지원 요청과 긴급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지급과 수급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과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실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6)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7)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8)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9)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과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의 복지지원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녀교육비·장애수당 등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그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7) 「지역보건법」 제19조·제21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제공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8)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2. 법 제42조제1항제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 3. 법 제42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 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부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 관한 정보
 - 4. 법 제42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5. 법 제42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

자료: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포괄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넓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빈번하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목록을 적시한 법 조항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정보 목록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소모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목록을 정한 이유는 정보 추출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보 추출을 위한 협력 요청 과정에서 정보 보유 부처나 기관,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상이하게 하거나 협력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황을 경험한 결과 불가피했던 대응이라 하겠다.

다. 데이터 연계와 정제

추출한 정보들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한다. 결합키는 생년월일, 성, 이름을 가명처리하여 생성한다. 법적 규정 등으로 주민번호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는 결합키라 할 수 있다. 생년월일, 성, 이름이 같은 중복키가 적지 않다. 2020년 통합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20, p. 77)의 경우 표본 중 중복 개인이 개인 중 12.6%, 중복 개인이 속한 가구는 가구 중 25.7%, 중복 개인이 속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 전체는 개인의 33.1%

에 이른다. 가구 단위 분석을 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30% 이상의 표본 손실이 발생한다.

결합이 완료된 통합 행정데이터는 자료의 정확성과 비식별화를 위하여 점검,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친다. 통합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활용 전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며 이를 완료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분석센터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다.

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관련 과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는 적지 않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 세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는 안정적인 데이터 협력을 위한 협치의 강화이다. 둘째는 첫째 과제와 관련되지만 다소 다른 측면인, 데이터 목록의 법적 명시에 대한 극복과 데이터 목록에 대한 합리적 판단 과정 마련이다. 셋째는 데이터 형태의 다변화 가능성 제고이다.

1) 데이터 협력을 위한 협치의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수의 행정데이터 플랫폼이 행정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행정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있지만 영미와 달리 이 플랫폼은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행정데이터 처리자 또는 연계,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이어서 이용자에게는 더 분산적인 것으로 느

껴질 수 있다. 개별 행정데이터 활용으로는 정책 분석에 적지 않은 한계를 남긴다. 따라서 개별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넘어 통합 행정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할 때는 자료 보유자 사이의 협력이 더없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협력을 합리적으로 촉진할 협치는 오히려 약하다. 유럽의 통계청들이 행정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활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표 6>과 같다. ‘자료 보유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협력에 대한 동의’라고 응답한 조직의 수도 적지 않다. 요는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 정보 보유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정보 보유자 수가 많은 경우 보유자들 사이의 안정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협치기제가 절실하다.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정보 목록의 합리적 결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보량은 앞서 관련 법 조항에서 보았듯 매우 방대하다. 안정적인 정보 추출을 위하여 법에 협조를 요청, 추출할 정보의 목록을 명시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계속 변화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자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

표 6. 성공적인 행정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기여하는 요인들

성공 요인	응답한 정보 보유 기관의 수*
자료 보유자와의 긴밀한 협력 Close cooperation with data owner	43
법적인 틀 Legal framework	27
자료의 질 data quality	20
자료 교환을 위한 기술 Data exchange technology	17
표준화된 단일 식별자의 구비 Existence of uniform/unique identifiers	10
협력에 대한 동의(협약) Collaboration agreement	10
연계 정보의 활용 가능성 Availability of linkage information	5
자료 제공의 적시성 Timeliness in data release	5
자료 보호 조직에 의한 권한 부여 Right granted by the data protection authority	4
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경험 Experience of the NSI with the data	3
정치적 지지 Political support	2
통계청의 요구에 대한 자료 보유자의 이해 Data owner's understanding of NSI's needs	2
메타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of metadata	2
일반적인 공통 기술의 수용 Adoption of common technical solutions	2
자료의 불변성 Data not subject to change over time	1
자료 보호 기술 Data protection technology	1
지불에 대한 협약 Payment agreement	1
통계청에 의한 자원 투입 Commitment of resources by the NSI	1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 보유자의 인식 Recognition by the data owners of the importance of the data for the NSI	1

주: * 표시는 중복 응답 처리.

자료: Santourian, A., & Petrakos, M. (2018). Analysi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U Member States and EFTA Countries. p. 26.

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목적을 고려한, 추출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와 협력이 가능한 논의 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목록은 관련 부처의 참여가 상당 수준으로 확보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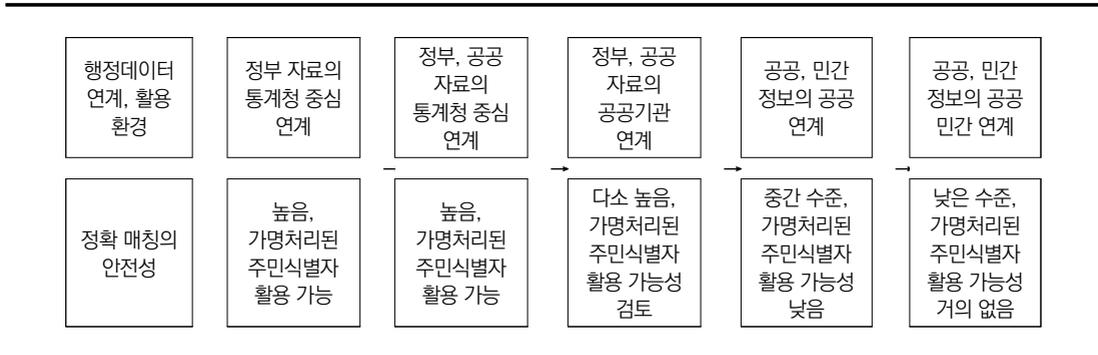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형태 다변화를 위한 연계기 마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형태로 기대할 수 있

는 다양한 변용태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변 정보를 보강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행정데이터의 연계로 정책연구를 강화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 행정데이터의 연계 데이터는 이미 복유립 등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형태이다. 그리고 행정데이터를 종단으로 결합,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사회이동성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

패널데이터 또는 설문조사 자료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정확 매칭(exact matching)을 가능하게 하는 결합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용 중인 생년월일, 성, 이름을 가명처리한 결합키로는 정확 매칭이 가능하지 않다. 앞서 언

그림 2.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과 결합키의 안전성 확보 필요 수준



자료: 이현주, (2022).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 사회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기초로 보완.

급한 바와 같이 생년월일, 성, 이름이 같은 국민의 수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 결합키는 중복 문제뿐 아니라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주민번호 중 여덟 번째 자리의 가명처리와 이를 활용한 결합키의 보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이 결합키를 활용한 패널 자료 구축은 쉽지 않을 듯하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주체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를 연계하고 그 통합 데이터를 정책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북유럽의 국가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데이터를 주민번호(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가명처리한 결합키를 활용하여 연계하고 있다.¹⁾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서 정부와 민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연계

하는가, 연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따라 안정성 수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정보의 결합에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 자료 분석 환경, 자료 접근 절차의 구성이 상이할 수 있다. 요는 정부의 행정데이터로 한정하여 통계청 또는 정부가 연계할 때는 민간의 연계와 다른 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의미 구현을 위한 활용 방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의 의의를 살리자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데이터 한계로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개선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에서 행정데이터는 정부 관리하의 공공데이터라는 특성이 고려되

1) 북유럽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주로 승인된 공공 부문 연구자에 한정된다.

어야 한다. 해당 데이터의 정보 주체는 국민이고 정보처리자도 국민이 낸 세금에 기초를 둔 정부이다. 행정데이터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이 점을 견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책 분석을 시도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분석 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과 가구 단위의 분석에 한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지역과 시설 단위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책 영역이다.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중요한 쟁점이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가구와 개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 단위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 소득보장, 주거안정, 사회경제적 이동 등 정책 영역별 효과와 영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통합 행정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요 정책 지표가 보강되어 생산되고 이 지표들이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 지표는 정책의 조정 및 상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주체 간 협력을 도모하는 데 기초가 되기도 한다. 영국 신노동당 집권 말기(2007~2010년)의 공공서비스협정(PSA: Public Service Agreement)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최영준 외, 2012, pp. 86-129). 예를 들어

‘PSA 17 노후 빈곤 대응과 자립 및 복리 증진’의 주관 부처는 연금노동부이고 해당 협정의 주요 지표는 50~69세의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 간의 격차, 연금 수급자의 빈곤, 65세 때 건강 기대수명,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와 이웃에 대한 만족도, 자립적 삶을 위한 지원을 받는 65세의 비율이다. 이러한 지표를 공유한 연관 부처는 이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노동부와 협력해야 한다. 부처의 경계를 넘어 성과 지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며 공히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체계의 핵심 중 하나는 목표와 평가를 공유하는 기반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타 과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주로 정책 집행에서 생성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해당 데이터의 정보 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명처리와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친다.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활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목적을 준용해야 한다. 활용 목적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 중 하나로 사용자의 제한도 불가피하다. 민간 기업 등을 우선 활용자로 포용하기가 어렵다. 공공으로 한정하는 접근성 제한은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기도 하고 데이터의 목적을 고려한 조치이다. 영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는 ADR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도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윤리적이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유종성 외, 2020, p. 17). 북유럽의 통계청도 행정데이터 활용에 대한 승인을 주로 공공 부문 조직의 연구자로 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통계청은 최근에는 일부 민간 부문의 활용을 수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 부문이 80~90%에 이른다(Thaulow, 2019, 이현주 외, 2020, p. 376에서 재인용). 적어도 사회보장제도의 심의, 조정, 연구를 위해 활용되도록 이용자 접근성에 대한 설계를 할 필요도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항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 공간에 대한 규정이 적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해당 조항의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분석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는 폐쇄적 분석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출자료는 분석 결과에 한정하여 심의 후 반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이제 구축의 첫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당분간 엄격한 분석 환경 조성이 불가피하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 원격 분석, 분석센터 확대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간 구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공간의 중기 개선 방안 중 하나는 통계청과의 협업으로 통계청과 사회보장위원회가 합동으로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생산, 발표하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공간도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목적을 구현하자면 안전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쌓이고 분석 결과의 생산적인 활용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㉞

참고문헌

- 공공기관의 가명정보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1호 (202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6&mCode=D010020020&nttId=6973>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 제32674호, 2022. 6. 7. 타법개정 (2022).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1. 12.). **사회보장**

-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안). 사회 보장위원회 내부 자료.
- 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pp. 5-37.
- 이현주, 강희정, 손병돈, 이재원, 박형준, 김성아. (2018).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오욱찬, 이윤경, 이원진, 성재민, 이길제,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 이현주. (2022).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 사회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 최영준, 김보영, 박치성, 이주하, 정재철, 최종호, 박근혜, 최혜진. (2012).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 Hotz, V. J., George, R., Balzekas, J., Margolin, F. (1998). Administrative Data for Policy-Relevant Research: Assessment of Current Utility and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A Report of the Advisory Panel on Research Uses of Administrative Data of the Northwestern University/University of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 Santourian, A., Petrakos, M. (2018). *Analysi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U Member States and EFTA Countries*. Eurostat.
- Thaulow, I. (2019). *Researchers Access to Administrative Micro-Data at Statistics Denmark*. 미발간 자료.

Evidence Based Soci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Data

Lee, Hyon-Jo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system is under develop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revised in 2021. An integrated source of data,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system is expected to help better understand,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ing social security system.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addres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ata.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on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ed. Second, governance for data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data-linkage keys. Fourth, new research topics and methods such as changes in the analysis unit should be developed. Finally, policy improvement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 the results of data analysis.